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29일 12시 58분



## 목포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내

2022.03.21 08:57 조회수 142 등록자 김은영

사적모임	다중이용시설	행사·집회	종교시설
8인까지	<b>23시까지 제한</b> 유흥시설,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파티룸, 목욕탕업, 실내체육시설, 평생직업교육학원, 마사지 안마소, 영화관 공연장* *영화관 공연장: 시작시간 23시까지 허용 (단, 종료시간 익일 01시 초과 금지) • 출입자명부·방역패스 잠정중단	집중 구분없이 <b>299명까지</b>	집중 구분없이 <b>수용인원 70%</b> (정규종교활동 외 행사 시 299명까지)

\*2022. 3. 1. 0시부터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으로 음성확인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(본인부담금 발생)

노출기간 : 2022-03-21 ~ 2022-04-03

URL : [https://www.mokpo.go.kr/www/open\\_administration/city\\_news/covid19\\_info?idx=495222&mode=view](https://www.mokpo.go.kr/www/open_administration/city_news/covid19_info?idx=495222&mode=view).

### 목포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내

2022. 4. 4.(월) ~ 2022. 4.17.(일)

사적모임 : 10인까지

다중이용시설 : 24시까지 제한

유흥시설, 식당카페 노래연습장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파티룸, 목욕탕업, 실내체육시설, 평생직업교육학원, 마사지안마소, 영화관공연장, 영화관 공연장 : 시작시간 23시까지 허용 (단, 종료시간 익일 01시 초과 금지)

출입자명부 방역패스 잠정 중단

행사집회 : 집중구분없이 299명까지

종교시설 : 집중 구분없이 수용인원 70% (정규종교활동 외 행사 시 299명까지)

※ 2022. 3. 1. 0시부터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으로 음성확인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(본인부담금 발생)

첨부파일

목포알리미.jpg (102 hit/ 63.8 KB) [미리보기](#)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목록

이전글 < 목포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... >

다음글 > 3월은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임...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